

「2023 대한민국 ICT 대상」 수여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우수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계획을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8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 종 호

『2023 대한민국 ICT 대상』 수여계획 공고

1 개요

-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ICT 우수기업(중소·중견·벤처) 등을 발굴
- 표창 수여를 통해 ICT기업과 산업의 범국가적 인지도 향상 및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 고취

2 수여 규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10점(단체9점, 개인1점), 특별상* 5점

훈 격		디지털 기술	디지털 확산	디지털 인재	디지털 공헌	계
장관표창	단체	3	3	2	2	9
	개인	-	1	-	-	1
특별상(단체)		1	2	1	1	5
합 계		4	5	3	3	15

* 수여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동아일보, 전자신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③ 추천 대상

○ ICT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근 2년간 디지털 혁신기술 등 ICT 산업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단체)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중소·중견·벤처 기업

※ (개인)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ICT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분야		신청대상 및 자격
디지털 기술		○(혁신기술) 미래 신기술 개발 및 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ICT 기업
디지털 확산	단체	○(해외수출) 해외수출 및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판로 확보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기업
	개인	○(해외수출) ICT 우수기업이 해외진출·수출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기관 및 단체 임직원
디지털 인재		○(일 자리) 고용 인원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경영 건전성 등이 뛰어난 ICT 기업
디지털 공헌		○(사회공헌) ICT 기술로 사회문제(보건·안전·환경 등)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ICT 기업

④ 선정절차 : ①사업 공고→②접수→③심사(재무·서류)→④후보선정(1.5배)
→⑤대상선정

① 사업공고 및 홍보

- (사업공고) 공고일 ~ 10.6(금)
- (공고문 게재) 과기정통부 및 ICT유관기관(6개 공공기관 및 3개 협단체) 홈페이지, 주요 일간지(동아일보, 전자신문) 지면홍보

② 접수 및 적격검토

- 접수결과 확인 후 재공고* 여부 판단, 접수자에 대한 적격검증 실시

* 공적분야로 접수경쟁률이 2:1 미만인 경우, 해당분야 추가공고

구분	기준 및 방법(예시)
공적기간 확인	·(단체) 해당분야 2년 이상 활동/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개인)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공적 사실관계	·제출 공적 사실관계 확인/증빙자료 제출 요청 *증빙자료 미제출 : 부적격
추천 제한 사항*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인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확인/고용노동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실 조회/공정거래위원회 ·임금체불 명단 확인/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준용

③ 재무심사 및 서류심사

- 재무심사(20점)+서류심사(75점)+정성평가(5점) 합산

※(개인) 서류심사+정성평가

구분	시기	위원	방식	점수	심사기준
재무심사	10월	회계사 3명	온라인	20점(산술평균)	①안정성 ②수익성 ③성장성 ④투자
서류심사	11월	분야별 각 5명	오프라인	75점(절단평균*)	①독창성 ②우수성 ③기여도
정성평가**	11월	심사위원장	오프라인	5점	정성적 평가
계		24명	-	100점	1.5배수 선정

* 최저, 최고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합의 평균

** 심사위원장이 서류심사시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평가(총 5점)

⑤ 추진일정

① 사업공고 (~10월)	② 심사 (~10월)	③ 시상 (12월)	④ 수상기업 홍보 (12월)
▶ 공고 안내 및 홍보 -보도자료 배포 -유관기관 추천요청 -홍보	▶ 추천제한 확인 ▶ 심사위원회 개최 -추천후보(1.5배) 선정	▶ 대상선정 ▶ 시상식 개최 * 2023디지털이노페스타	▶ 수상기업 홍보지원 -수상현판/배너 제작 -홍보영상 제작/송출 -기업별 언론홍보 등

⑥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단체 [붙임3]	- 신청요약서	서식1
	- 공적조서	서식2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공적증빙서류	서식4
	- 사업자등록증, '21, '22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사본)	-
개인 [붙임4]	- 신청요약서	서식1
	- 공적조서	서식2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공적증빙서류	서식4
	- 인사기록카드*	자유양식

*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인사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제출

⑦ 행정사항 안내

○ 접수기한 : 공고일로부터 10월 6일(금) 18시까지

○ 서식 다운로드 : ICT대연합 홈페이지(www.kfict.or.kr) 공지사항

○ 접수방법 : 전자우편(ictbest@kfict.or.kr)으로 제출

- 원본 서류를 스캔파일(PDF)과 작성한 한글파일(hwp) 모두 송부
- 파일명은 '1. 제출서류명_기업명(단체) 또는 성명(개인)'로 작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표창대상으로 선정 시 개별 통보

○ 문의처 : ICT대연합 대외협력본부 (☎ 02-2132-2106, 2112, 2116)

※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표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적이 거짓인 경우에는 표창 취소 및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훈·포장 등 각종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필수로 첨부해야 하며, 입증되지 않은 공적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 [붙임] 1.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2. 제한사항 조회방법.
3. 장관표창 신청서류(단체).
4. 장관표창 신청서류(개인). 끝.

① 자격기준

< 단체 >

-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 개인 >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임원 또는 직원
- 디지털 혁신기업이 글로벌 진출 및 해외수출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기관이나 단체 임원 및 직원

② 추천제한

- (단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공적분야가 다르더라도 연 1회 이상 불가)
- (개인)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신청제한 및 제외대상

- '23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3,076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 및 개인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항 조회 안내(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9조의2, 동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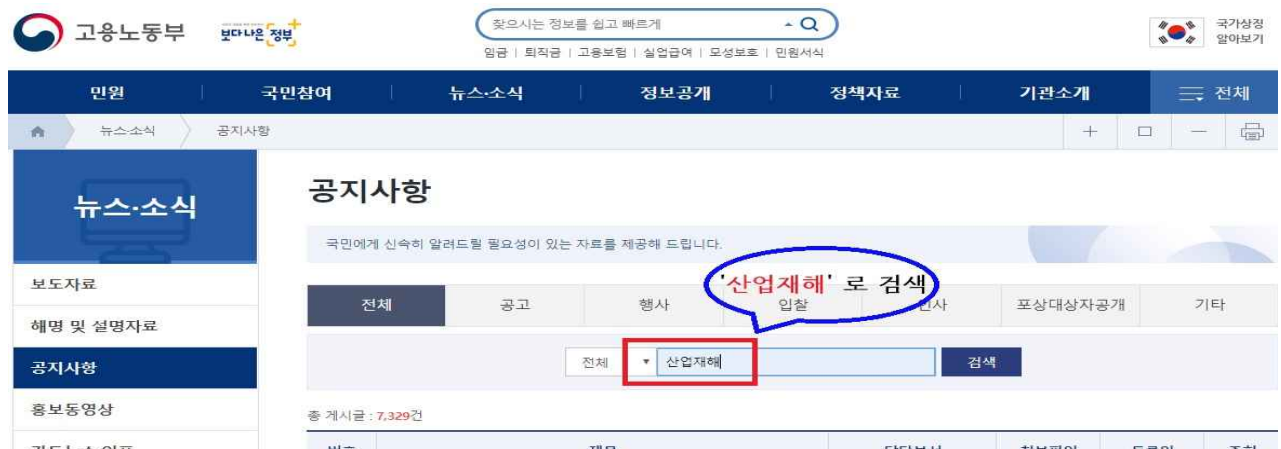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3개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계정관리

공지사항

홍보동영상

카드뉴스·인포

월간내일·웹진

e-뉴스레터

전체 ▼ 산업재해

검색

총 게시물 : 172건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
172	[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채용...	산재예방정책과		2019.02.28	67
171	[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서류전...	산재예방정책과		2019.02.22	411
170	[공고] 2019년도 산업재해예방 유공 포상 접수 안내	산재예방정책과		2019.02.18	511
169	[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공개...	산재예방정책과		2019.02.13	379
① 168	[공고] 2018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재예방정책과		2018.12.28	1631
167	[포상대상자공개] 2018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명단	산재예방정책과		2018.06.29	2152
166	[포상대상자공개] 산업재해예방 유공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산재예방정책과		2018.05.02	2183
165	[공고] 2018년도 산업재해예방유공 포상 접수 안내	산재예방정책과		2018.02.22	1565
② 164	[공고] 2017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재예방정책과		2017.12.20	6347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예방정책과
 산재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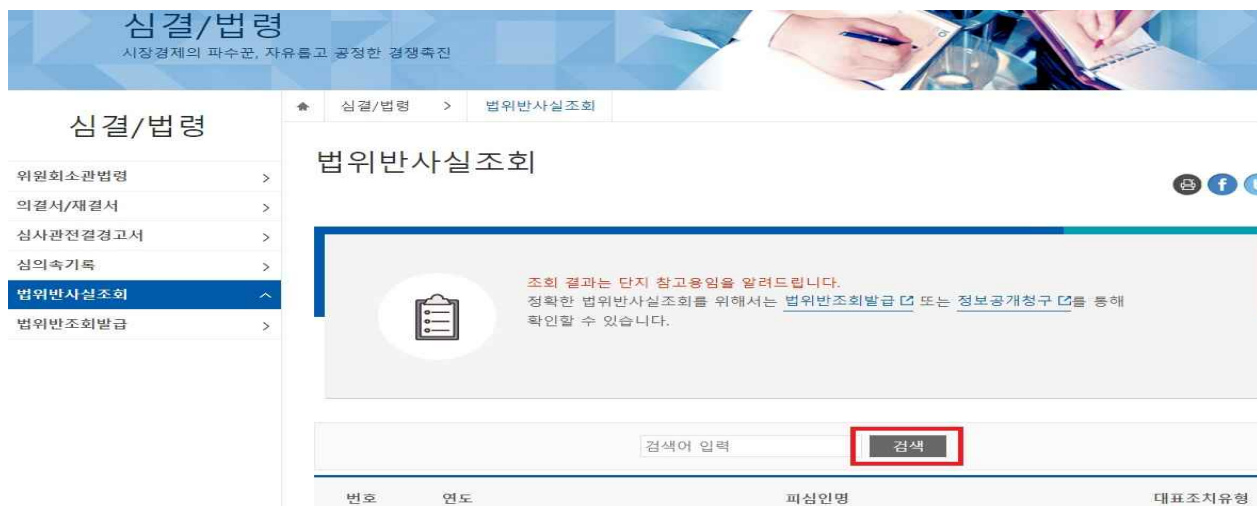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 동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l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청렴정책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법령정보	+
국고보조사업	+
재정정보공개	+
기금운용(고용/산재)	+
고용노동통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직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 2016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16.6.13.~2019.6.12.
- * 2017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17.1.4.~2020.1.3.
- * 2017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17.7.3.~2020.7.2.
- * 2018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18.1.15.~2021.1.14.
- * 2018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18.6.18.~2021.6.17.

* 체불액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

☒ 가나다순 ☐ 고액순

전체

10개씩

전체
전체
성명
총 계
사업장명

지역-전체

업종-전체

검색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
----	----	------	----------	----------	-----

장관표창 신청서류
(단체)

[제출 서류 목록]

- ① 신청요약서 [서식1]
- ② 공적조서 [서식2]
- ③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④ 공적증빙서류 [서식4]
- ⑤ 사업자등록증, '21, '22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해당 부분만 스캔하여 제출)

※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 될 경우 장관표창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1】

신청요약서(단체)

□ 기본정보

단체명	대표자	구분	설립연도
0000000	000	중견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0000.00.00
주소	(단체의 주소지)		
담당자 연락처	010-0000-0000	담당자 이메일	00000@000

□ 기서훈

* 단체명으로 받은 사항만 기재

기서훈	세부내용
장관표창('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정보통신 유공)

□ 추천제한 조회결과

*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물의야기
중대재해 (제2023-004호)/ 해당사항 없음	고발1/과징금1/ 해당사항 없음	명단공개/ 해당사항 없음	언론보도(23.0.0)/ 해당사항 없음

□ 주요성과

※ 분야별 해당내용만 작성, 성과에 대해 증빙자료(별도증빙) 제출 필수

① 디지털 기술

구분	내용	성과
1	◦ 국내외 기존 기술 및 제품과의 독창성(차별성) - ICT 관련 인증 및 특허 보유 현황	00건
2	◦ 기술 상용화 및 국산화 추진실적 - 신기술(제품) 개발 실적	00건

② 디지털 확산

구분	내용	성과(건)
1	◦ 국내외 기존 기술 및 제품과의 독창성(차별성) - 국외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00건
2	◦ 국외 투자유치 건수	00건

③ 디지털 인재

구분	내용	성과(건)
1	◦ 국내외 기존 기술 및 제품과의 독창성(차별성) - ICT 관련 인증 및 특허 보유 현황	00건
2	◦ 최근 2년간 상시근로자 고용(2021년~현재)	00명
3	◦ 최근 2년간 임시근로자 고용(2021년~현재)	00명

④ 디지털 공헌

구분	내용	성과(건)
1	◦ 국내외 기존 기술 및 제품과의 독창성(차별성) - ICT 관련 인증 및 특허 보유 현황	00건
2	◦ 사회문제(보건·안전·환경 등)를 해결하여 국가화 사회에 공헌한 횟수	00회
3	◦ 지역사회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횟수	00회

【서식2】

공 적 조 서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e-mail)	(직장)		
추천 훈격	장관표창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ICT 산업발전 유공 (아래 4개 분야 중 택1)		공적 기간	년 개월 (공적기간은 '23년 10월 6일을 기준으로 작성)
	디지털			
	기술	확산		
공적요지(70자 내외) ※ 공백제외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6하 원칙에 따라 실적위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작성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공적은 2021년 ~현재까지의 내용 작성 ◇ 예시 - 2000.01.~2000.12.까지 □□공사를 진행하며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oo억원)하고, 공기를 단축(o년o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 조사자: (일반국민)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 ※ 추천관: (일반국민)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공적내용은 10페이지 이내 작성 - 공적은 2021년 ~현재까지의 내용 작성 - 공적에 대해 증빙해야 하며 불가한 내용은 불인정(증빙이 필요한 내용에 한함) * <u>소제목별 증빙자료 제출</u>([서식4]공적증빙서류' 및 '별도증빙'으로 제출) ☐ (대제목) 일반현황 ○ (소제목) 조직구성 - ○ (소제목) 재무현황 - ☐ (대제목) 목표 및 비전 ○ (소제목) 비즈니스 모델 - ○ (소제목) 향후 투자계획 - ☐ (대제목) 주요성과 ○ (소제목) 사업수행실적 및 성과 - ○ (소제목) 매출 및 수출 신장도 - ○ (소제목) 국가경제 발전 및 ICT 산업 생태계 기여도 -	

공 적 내 용

【서식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명(단체명)			
소속(주소)		직위(급)	-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

성명(단체명)

(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4】

공적증빙서류

□ (소제목명)

주요내용	증빙자료	별도증빙 유무(O/X)

□ (소제목명)

주요내용	증빙자료	별도증빙 유무(O/X)

※ 작성방법

- ① (소제목명) 공적조서에 기재한 소제목명 기재
- ② (표_주요내용) 소제목의 주요내용 핵심사항을 간략히 기재
- ③ (표_증빙자료) 주요내용을 증빙할 사진, 이미지, 언론보도 링크 등 문서에 기재 가능한 증빙자료 작성
- ④ (표_별도증빙) 문서에 기재할 수 없는 발표자료, 비디오 파일 등은 별도증빙*으로 제출

* 별도증빙 파일명은 '[별도증빙] 단체명_소제목명' 으로 제출

장관표창 신청서류 (개인)

[제출 서류 목록]

- ① 신청요약서 [서식1]
- ② 공적조서 [서식2]
- ③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④ 공적증빙서류 [서식4]
- ⑤ 인사기록카드* 1부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인사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하되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제출

※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 될 경우 장관표창이 취소됨을 안내드립니다.

【서식1】

신청요약서(개인)

□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급	임원 여부	생년월일
000	00000000	00	O / X	00.00.00
주소	(주민등록지 기준)			
연락처	010-0000-0000	이메일	00000@000	

□ 기본정보

수공기간	기서훈	세부내용
(예시) 00년 00월	장관표창('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정보통신 유공)

□ 추천제한 조회결과

*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징계 (연도·종류, 사면)	물의야기
중대재해 (제2023-004호)/ 해당사항 없음	고발1/과징금1/ 해당사항 없음	명단공개/ 해당사항 없음	'00 견책(사면)/ 해당사항 없음	언론보도(23.0.0)/ 해당사항 없음

* 소속 기관명으로 조회

【서식2】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장관표창	추천 순위	(공란)
공적 분야	ICT 산업발전 유공 (디지털 확산)	공적 기간	년 개월 (공적기간은 '23년 10월 6일을 기준으로 작성)
공적요지(70자 내외) ※ 공백제외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6하 원칙에 따라 실적위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작성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공적은 2021년 ~현재까지의 내용 작성 ◇ 예시 - 2000.01.~2000.12.까지 □□공사의 시공책임자(담당자)로 근무하며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oo억원)하고, 공기를 단축(o년o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 조사자: (일반국민)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 ※ 추천관: (일반국민)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 · 포장 ·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 공적내용은 10페이지 이내 작성 - 공적은 2021년 ~현재까지의 내용 작성 - 공적에 대해 증빙해야 하며 불가한 내용은 불인정(증빙이 필요한 내용에 한함) * <u>소제목별 증빙자료 제출</u>([서식4]공적증빙서류' 및 '별도증빙'으로 제출) ☐ (대제목) ICT 기업 지원 업적 ○ (소제목) 창업 및 투자유치 등 지원 - ○ (소제목) 전문컨설팅 및 투자 등 지원 - ○ (소제목) 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 등 지원 - ○ (소제목) 기업설명회, 수출·투자상담회 등 지원 - ○ (소제목) 기타 학술회의(컨퍼런스) 등 참가 지원 - ☐ (대제목) 기여도 및 파급효과 ○ (소제목) 신기술 개발, 신시장 창출 등 기여 - ○ (소제목) ICT 산업 생태계에 기여 - ○ (소제목)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공 적 내 용

【서식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4】

공적증빙서류

□ (소제목명)

주요내용	증빙자료	별도증빙 유무(O/X)

□ (소제목명)

주요내용	증빙자료	별도증빙 유무(O/X)

※ 작성방법

- ① (소제목명) 공적조서에 기재한 소제목명 기재
- ② (표_주요내용) 소제목의 주요내용 핵심사항을 간략히 기재
- ③ (표_증빙자료) 주요내용을 증빙할 사진, 이미지, 언론보도 링크 등 문서에 기재 가능한 증빙자료 작성
- ④ (표_별도증빙) 문서에 기재할 수 없는 발표자료, 비디오 파일 등은 별도증빙*으로 제출

* 별도증빙 파일명은 '[별도증빙] 성명_소제목명' 으로 제출